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 공고

우리 산업의 글로벌 혁신 역량을 제고하기 위해 해외 우수 연구개발기관에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구축하고, 우리기업과의 공동R&D를 지원하는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M.AX 분야 공동연구)」 시행계획을 다음과 같이 공고하오니 희망 기관은 관련 규정 및 절차에 따라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2026년 05월 21일
산업통상부장관

I 사업개요

1. 사업 목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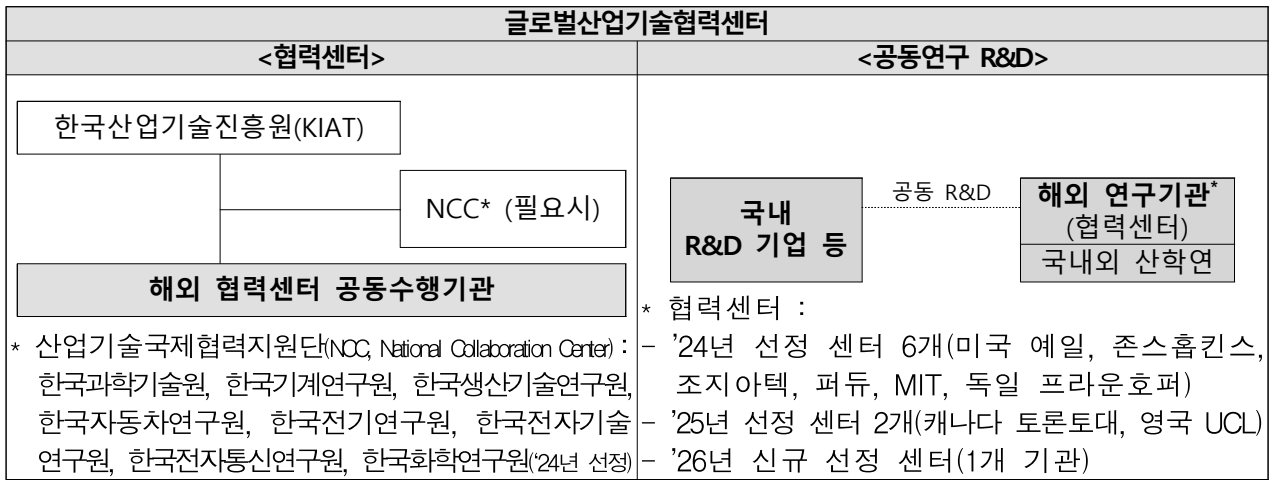
- 한국 기업과 글로벌 우수 연구기관의 **지속가능한 R&D 협력 모델**을 통한 AI 기반의 국내 제조 가속화(M.AX) 및 산업적 파급효과가 높은 **우수 연구성과 창출**
- * M.AX(Manufacturing AI Transformation) : 제조업에 인공지능(AI)을 접목해 생산 공정과 운영 전반 혁신

2. 사업내용

- 산업정책상 확보가 필요한 M.AX 분야 전략기술 확보를 목적으로 국내기업 및 협력센터 등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의 공동연구 과제 지원

<참고>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추진체계

- ① **(협력센터)** 해외 우수 연구기관內 한국과의 협력 거점으로서 『글로벌 산업기술 협력센터』를 설치하고 우리 기업의 글로벌 기술협력을 지원
 - (주요업무) 한국 기업과 해당기관 간의 협력수요 조사·발굴, 매치메이킹, 공동연구과제 기획 및 국내 파견 연구자 현지 지원
- ② **(공동연구)** 협력센터에서 발굴 및 기획한 글로벌 산학연 컨소시엄과 한국 기업 간 공동연구 과제 지원



* 본 공고는 공동연구 유형 지원

3. 연구개발비 지원 규모, 기간

구분		지원규모	지원기간
글로벌 산업기술협력센터	공동R&D	20억원 내외/년	최대 5년(41개월+최대 19개월)

○ 중장기(최대 5년)·중대형(연간 20억 이내) 신규과제 9개 이내

* 지원기간에 따른 계획 및 예산을 사업계획서에 포함하여 제출. 1단계(41개월) 기간을 초과하는 과제는 진도점검, 단계평가 등을 시행하여 성과가 부진한 경우 지원 중단 가능

** 과제별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연구개발기간, 단계 구분 등은 평가, 협약 절차 등을 통해 변경 가능

*** 2026년 글로벌산업기술협력센터 사업 시행계획 공고(산업통상부 공고 제2026-168호) 내용, 접수 및 선정평가 결과 등에 따라 지원과제수 등 지원 규모는 변경 가능

- 회계연도 일치 관련 유의 사항

구분	안내
정부지원 연구개발비	1차년도('26년)는 연간 과제당 지원규모의 5/12(예: 연간 20억과제 기준 8억원 이내)까지 지원 2차년도 이후 연간 지원규모(20억원 이내)로 총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최대 100억원 지원
연구개발 기간	1차년도 5개월('26.8월~'26.12월)로 설정, 2차년도 이후 연간 12개월로 전체 연구개발기간을 최대 5년(60개월) 설정

<연구개발기간 5년 과제 예시>

지원 연도	1단계				2단계		전체 기간
	1차년도	2차년도	3차년도	4차년도	1차년도	2차년도	
	'26. 8.~12. (5개월)	'27. 1.~12. (12개월)	'28. 1.~12. (12개월)	'29. 1.~12. (12개월)	'30. 1.~12. (12개월)	'31. 1.~7. (7개월)	'26.8.~31.7 (60개월)
지원 예산	8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20억원	12억원	100억원

4. 지원대상(신청자격) 및 지원분야

○ (선정방식) 품목지정

구분	공동연구(R&D)
주관기관	국내 기업
공동기관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필수) 협력센터 선정 해외기관*
	[국내 및 해외 공동 연구개발기관](선택) 국내 및 해외 산학연

○ (지원대상) 9개 과제(과제별 제안요청서(품목 RFP) 참조)

<지원대상 과제 목록>

No.	RFP 번호	제안기술명 (품목 RFP명)
1	AI바이오-1	차세대 RNA 치료제 지능형 연속 제조 공정 플랫폼
2	AI제조서비스-1	석유화학산업 특화 소재 개발, 품질 분석 자동화를 위한 자율실험실(Self-Driving Lab) 및 AI팩토리 연계 제조서비스 플랫폼 개발
3	AI팩토리-1	점탄성 소재 복합 압출 공정 생산효율 최적화 AX 기술개발
4	AI팩토리-2	제조 전주기 데이터의 통합 연계를 지원하는 AI 자율제조 기술 개발
5	AI팩토리-3	복합 제조 공정의 통합 관리 및 자율 의사결정 AI 기술 개발
6	AI팩토리-4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제조 및 물류 로봇 자율화를 위한 디지털 트윈기반 피지컬 AI 자율제어 기술 개발
7	AI팩토리-5	차세대 이차전지 소재 제조공정 AI 자율제조 플랫폼 기술 개발
8	AI휴머노이드-1	극한 환경에서 인간-휴머노이드 로봇 협업용 Edge AI 기반 고신뢰·고속 Mobile Ad-hoc Network(MANET) 통신 시스템
9	AI휴머노이드-2	인간-로봇 협업 제조현장의 공정 물류·핸들링 안전 자율작업을 위한 현장적응형 Multi AI Agent 기술 개발

* 과제별 상세 요구내용은 과제별 제안요청서(RFP) 참조

- 주관기관은 국내기업, 해외 공동연구개발기관에 협력센터로 선정된 해외기관 참여 필수
-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확보를 위해 우수 해외기관과의 국제협력이 필수적인 과제 선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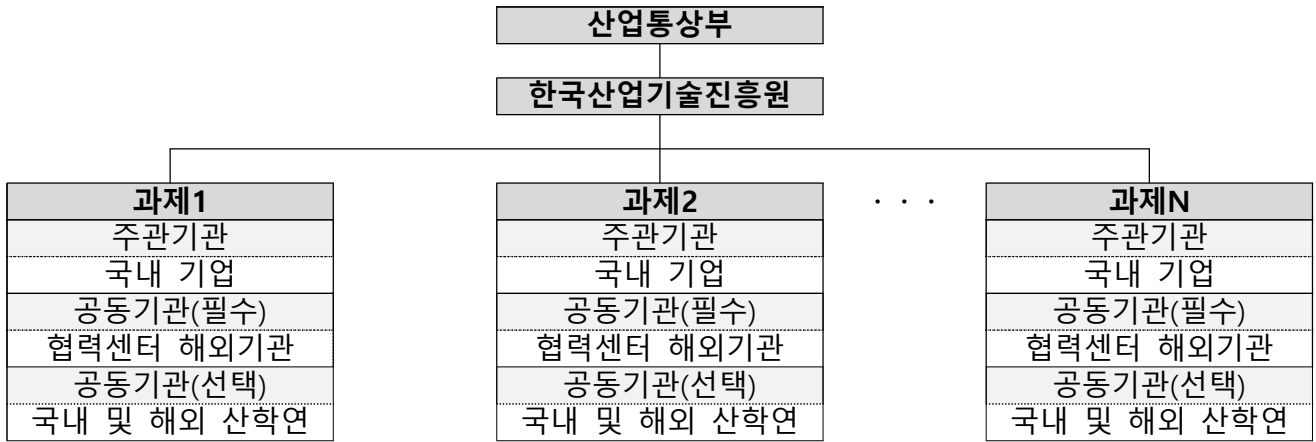
* 컨소시엄 내 기관별 업무 비중은 개발대상 원천기술의 특성을 반영하여 합리적으로 정하되, 해외기관의 업무 범위는 40% 이상을 원칙으로 함(다만, 별도 소명시 예외 가능)

< 공동연구 과제 선정 기본요건 >

구분	세부 내용
차세대 산업원천기술 (1개 이상 해당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독창성] 세계적으로 선행특허(IP)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단순 요소기술 제외) • [핵심성] 차세대(5~10년 이내)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 • [혁신성] 파괴적 혁신을 통해 높은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기술
국제협력 필요성 (1개 이상 해당 필수)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원천기술 선점형] 해외가 차세대(5~10년 이내) 신기술·신제품의 핵심 원천기술(IP)을 선점, 3년 이내 국내 개발 불가능 • [투자효율 확보형] 해외 선진기술의 활용을 통한 개발기간(1년 이상) 및 비용(50% 이상)의 대폭 감축이 가능 • [인프라 확보형] 해외 선진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연구개발 제한사항 해소 가능 (글로벌 데이터 확보 등) • [국제표준 확보형] 해외 선진연구기관 노하우를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적 • [글로벌공급망 구축형] 고도의 기술 진입장벽(기술보안 등)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요구되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

- (인력교류) 컨소시엄 내 국내기업 연구자의 해외 현지 파견(과제당 1인 이상, 총 연구개발기간의 1/2 이상) 필수

5. 사업 추진체계



6. 추진절차 및 일정

사업공고	-	www.motir.go.kr, www.kiat.or.kr, www.k-pass.kr, www.gtonline.or.kr
본계획서 접수	~7.15(수) 16시*	www.k-pass.kr를 통해 접수 *접수기한은 한국표준시 기준
본계획서 평가	8월	전문기관(한국산업기술진흥원)
지원대상과제 확정	8월	산업통상부
협약체결 및 사업수행	8월	전문기관과 연구개발기관 간 협약체결 및 자금지원

* 일정은 상황에 따라 일부 변경 가능

1. 지원대상(신청자격)

- 기업, 대학, 연구기관, 의료기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용어의 정의))
-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 中 국내기업은 접수마감일 현재 사업자 등록증 및 법인등기부등본 기준으로 창업 1년 이상 경과하고,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가 발급한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를 보유하고 있는 국내 사업자
 - * 「기초연구진흥 및 기술개발지원에 관한 법률」 제14조의2에 의거하여 특정연구개발사업의 추진을 위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위탁을 받아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에서 발급하는 인정서
 - 동 사업 지원대상에서 “연구개발전담부서 인정서”만 보유한 기업은 미포함

2. 지원조건

가. 연구개발과제 연구개발비 구성

- 과제의 연구개발비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와 기관부담연구개발비(현금 및 현물)으로 구성
- 과제에 참여하는 자는 정부지원연구개발비를 지원받아 과제를 수행하여야 하며, 영리기관의 경우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을 개별 부담하여야 함
 - 수요기업의 경우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없이 과제 참여가 가능(이 경우 기관부담 연구개발비는 현물만 부담 할 수 있음)

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 및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 부담비율

-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이 연구개발기관 유형에 따라 달리 적용

연구개발기관 ¹⁾ 유형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 비율(원천기술형)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²⁾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50% 이하
중견기업 ³⁾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0% 이하
중소기업 ⁴⁾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수요기업 ⁵⁾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75% 이하
그 외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100% 이하

- 1) '연구개발기관'이란 과제수행을 위하여 선정된 주관연구개발기관 및 공동연구개발기관임
- 2)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에 따른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중견기업이 아닌 기업임
- 3) '중견기업'이란 「중견기업 성장촉진 및 경쟁력 강화에 관한 특별법」 제2조 1호의 기업임
- 4) '중소기업'이란 「중소기업기본법」 제2조제1항 및 3항과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중소기업 범위)에 따른 기업임
- 5) '수요기업'이란 개발제품 및 기술에 대한 구매 또는 실시를 희망하여 개발과정에서 성능 평가 및 검증 역할을 하거나, 인력의 채용을 희망하여 교육 지원의 역할을 하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아닌 공동연구개발기업임

- 산업위기지역 소재기업* 중, 중소기업이 수행하는 과제는 예외적으로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지원비율을 해당 연구개발기관 연구개발비의 80% 이하로 할 수 있음

* "산업위기지역 소재 기업"이란, 「지역 산업위기 대응 및 지역경제 회복을 위한 특별법」제8조제2항, 제9조제2항, 제10조제6항 및 제8항,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제3항, 제7조제4항, 제8조제3항 및 제6항에서 위임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기 위해 산업통상부에서 고시한 "지역 산업위기대응 제도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에 따라 지정된 산업위기대응특별지역의 주된 산업에 종사하는 기업임(지정 기간에 한함)

- 연구개발기관은 연구개발비의 일부를 정부지원연구개발비로 지원받을 경우 부담하여야 할 기관부담연구개발비 중 현금부담비율은 아래의 표와 같음

연구개발기관 유형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부담비율
중소·중견기업이 아닌 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5% 이상
중견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3% 이상
중소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수요기업	해당 연구개발기관 기관부담연구개발비의 10% 이상
그 외	필요시 부담

- 외국 소재 기관(기업, 대학 및 연구소 등)의 경우는 위 표에서 '그 외'를 적용하고 세부 사항은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제31조를 따름

- 중견·중소기업이 'IV-3. 유의사항' 에서 정하는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전문기관의 승인을 얻어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 해당 신규인력에 대해 인건비 현금 계상 가능(대기업은 제외)
- 해당 인력의 고용이 채용 연도 연구개발기간 이후에도 계속 유지되는 경우, 차년도에도 해당 인건비만큼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가능함.
-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감액 이후 해당 인력의 고용이 종료(퇴사 등)되는 경우 당초 인건비로 계상한 인건비(전액 또는 부족액) 반납 및 감액한 기관부담연구개발비 현금 추가 납부

3. 기술료 징수기준 및 방법

가. 기술료 징수

- 산업기술혁신사업의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는 권리를 획득한 대가로 실시권자가 연구개발성과를 소유한 연구개발기관이 지급하는 금액으로서, 기술료 및 기술료의

납부 방법 등에 관한 계약을 체결하고 해당 연구개발성과의 실시를 허락한 경우에 기술료를 징수함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해당 연구개발비를 지원한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의 일부 또는 성과로 인한 수익의 일부를 납부하는 것을 정부납부기술료*(기술료 등의 납부)라 함
- * 「상법」제169조에 따른 회사 등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이 직접 실시하여 얻은 수익 또는 징수한 기술료 중 일부를 중앙행정기관에 납부하는 금액
- 연구개발성과소유기관은 징수한 기술료를 참여 연구자 등에 대한 보상금, 연구개발에 대한 재투자, 지식재산권 출원·등록·유지, 운영 경비 등에 사용하는 경우에 기술료의 사용으로 구분함

나. 정부납부기술료 납부 대상

-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이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소유하고 있는 연구개발성과를 직접 실시하는 경우

다. 기술료 징수방식

- 연구개발성과를 실시하려는 자와 계약을 체결하고 실시권의 내용 및 범위, 기술료 및 기술료 납부방법 계약을 통해 기술료를 징수한 경우, 전문기관의 장에게 「기술료 징수 결과보고서」를 제출

* 정부정책 변화에 따라 징수방법 및 기준, 징수요율 등 변경 가능

라. 기술료 납부기준

- 직접실시의 경우, 연구개발성과로 인한 매출액에 기술기여도와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 제3자실시의 경우, 기술료 징수액 기준으로 기술료등납부의무기관에 따른 기술료율 및 정부지원연구개발비 상한 적용

구분		부과기준		요율	기술료 납부 상한
직접 실시	중소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연구성과로 인한 매출액	기술기여도 (과제협약)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제3자 실시	중소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2.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10% 이하
	중견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5%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20% 이하
	공기업, 대기업 등 기타 기업	실시계약에 따른 징수액		10%	정부지원연구개발비의 40% 이하

* 기업의 규모는 연구개발협약체결 시점을 기준으로 적용

마. 기술료 납부기간

- 기술료를 징수하거나 수익이 발생한 날이 속한 해의 다음해부터 5년이 되는 날 또는 연구개발과제가 종료된 날부터 7년이 도래한 날까지 징수·발생한 매년 납부
 - 전문기관의 장으로부터 기술료 납부고지서를 받은 날부터 90일 이내 납부
 - 천재지변, 재해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정하는 사유로 기한 내 납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납부기한 변경 가능

4. 연구개발비 산정 관련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별표 5] 산업기술 혁신사업 연구개발비 사용용도 및 세부 산정기준 참고

- 연구개발비 편성 및 사용과 관련하여 향후 회계 정산 또는 상시점검 등을 통해 불인정 등의 조치가 있을 수 있으니 규정을 숙지하여 연구개발비 사용 계획 수립 및 사용 필요
- 해외기관 소재국의 정부지원금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이 있다면 해당 비율을 우선 적용할 수 있음. 다만, 간접비 비율을 적용하는 모수가 한국의 수정직접비*와 다른 경우에는 이를 고려하여 해당 비율을 적용하여야 함.
 - * 직접비 중 '현물 부담액'과 '위탁연구개발비'를 제외한 금액
- 해외기관 소재국의 정부지원금에 적용되는 간접비 비율이 없다면 간접비 비율은 수정직접비의 17%를 적용하는 것을 권고함.

5. 제한조건 (아래의 경우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함)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제17조 및 별표2, 관련 규정 등 적용	
순번	세부내용
1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공고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사업의 기본목적에 부합하지 않는 때 - 연구개발과제가 공고된 과제제안요청서(RFP)에 부합하지 않는 때
2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 개발·기 지원 연구개발과제와의 중복성이 있을 경우 - 연구개발과제가 기 개발 또는 기 지원된 연구개발과제와 비교하여 판단 요소가 동일하거나 유사한 경우에는 중복과제로 판단하여 사전지원제외 대상으로 처리할 수 있음 * "NTIS(http://ntis.go.kr) > R&D 과제 준비 > 차별성 검토" 등을 활용, 중복성 검토
3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의무사항 불이행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연구책임자 등이 접수마감일 현재 의무사항(각종 보고서 제출, 기술료 납부, 기술료 납부계획서 제출, 정산금 또는 환수금 납부 등)을 불이행하고 있을 경우
4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제한 - 주관연구개발기관, 공동연구개발기관,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장, 공동연구개발기관의 장, 연구책임자가 접수 마감일 현재 국가연구개발사업에 참여제한 중인 경우
5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채무불이행 및 부실위험이 확인된 경우 -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별표2, 관련 규정의 검토기준에 따라, 연구개발기관(단, 비영리기관 및 공기업(공사)은 적용 예외), 연구개발기관의 장(단, 「공직자윤리법」 제3조의2에 따라 공직유관단체로 지정된 기관은 적용 예외), 연구책임자(공동연구책임자 제외)가 관련 사유에 해당시 사전지원제외 대상 또는 사후관리 대상으로 처리 - 접수마감일 이후 사전지원제외 기준에 해당하게 된 때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의 선정을 취소할 수 있음
6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여연구자가 국가연구개발사업 총인건비계상률 및 참여 과제수 기준을 만족하지 못하는 경우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는 사업 공고시 안내한 협약 월을 기준으로 연구개발과제(연구기관의 경우 기관 기본사업 포함)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총 연구개발과제 수행 총인건비계상률이 100%를 초과할 수 없음 - 연구개발과제의 연구책임자 또는 참여연구자가 연구책임자로서(세부주관책임자를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 동시에 수행하는 연구개발과제가 3개를 초과하거나 연구자로서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사전지원제외 대상과제로 처리 가능 - 참여연구자(연구책임자 및 공동연구책임자도 포함)의 연구개발과제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연구기관만 해당)에 참여하는 비율을 포함하여 100%를 초과할 수 없으며 신청 연구개발과제의 총인건비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한다.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연구개발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 가능 -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 전문생산기술연구소 등 인건비가 100% 확보되지 않는

	<p>기관에 소속된 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은 기관 기본사업을 포함하여 130% 이내에서 산정</p> <p>-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2항에 따라 연구개발과제 수에는 포함하지 않을 수 있으나 참여연구자의 총인건비계상률에는 포함</p>						
7	<p>○ 중소·중견기업의 동시수행 연구개발과제수를 준수하지 않았을 경우</p> <p>- 연구개발과제의 주관연구개발기관인 중소기업 또는 중견기업 중 한계기업이 접수 마감일 기준으로 주관연구개발기관으로 동시에 수행하는 산업통상부 소관 연구개발과제수가 아래 표의 기준 이상인 경우에는 사전지원제외로 처리함. 단, 공통운영요령 제20조제3항 각 호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는 연구개발과제 수에 포함하지 않음</p> <table border="1" style="margin-left: 40px;"> <thead> <tr> <th>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th> <th>연구개발과제 수</th> </tr> </thead> <tbody> <tr> <td>중견기업</td> <td>4</td> </tr> <tr> <td>중소기업</td> <td>2</td> </tr> </tbody> </table> <p>* 한계기업이란 최근 3개 회계연도 말 결산 재무제표**상 이자보상비율이 연속으로 1미만인 기업임. 이때, 기업신용평가등급 중 종합신용등급 또는 기술신용평가기관(TCB)의 기술신용평가 등급이 'BBB' 이상인 한계기업과 사업개시일로부터 접수마감일까지 5년 미만인 한계기업에 대해서는 정상기업 기준을 적용함</p> <p>** 종속회사가 있는 기업은 별도 재무제표, 없는 기업은 개별 재무제표를 말함(연결 재무 제표 기준 실적 불가)</p>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주관연구개발기관 유형 (한계기업)	연구개발과제 수						
중견기업	4						
중소기업	2						
8	<p>○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된 과제가 공통운영요령 제2조 1항 40의 3호에 따라 수립한 안전관리계획이 미흡한 경우(RFP상 안전과제로 표시) 등</p>						
9	<p>○ 공고 마감 시간을 기준으로 시스템 상 최종제출*을 완료하지 못한 경우 및 최종제출을 완료하였지만 필수 제출서류를 제출하지 못한 경우 등</p> <p>* 온라인 시스템(K-PASS) 내 제출 후, 접수증이 출력되어야 최종 완료</p> <p>* 공고 마감 후 온라인 전산장애, 미저장 등의 사유로 제출 기간 연장, 추가 접수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음</p>						
10	<p>○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운영요령' 및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등 관련규정에 따라 사전제외, 연구개발계획서 반려 사항에 해당하는 경우 등</p>						

6. 근거법령 및 규정

가. 근거법령 : 산업기술혁신촉진법 제27조 제29조 및 시행령 제39조, 「국가연구개발 혁신법」 및 동법 시행령 등

나. 관련규정 (www.k-pass.kr, 규정 및 서식)

-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국제기술협력 평가관리지침」, 「기술료 징수 및 관리에 관한 통합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연구·윤리 진실성 확보 등에 관한 요령」, 「산업기술개발장비 통합관리 요령」, 「연구자윤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산업기술혁신사업 기술개발 평가관리지침」 등

III

평가 절차 및 기준

1. 평가 및 협약체결 절차



* 위 내용은 추진상황에 따라 변동 가능

- 선정된 과제에 대한 연구개발비 및 개발기간은 평가결과에 따라 조정될 수 있으며, 과제 추진 중 관련 규정에 따라 특별평가 등을 통해 과제가 중단될 수 있음
 - 선정된 과제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권리보호를 위하여 변호사 검토를 거친 국내외 연구개발기관 간 '국제계약서'와 '변호사 검토의견서'를 평가결과 확정통보 후 2개월 이내에 제출해야 함
 - 주관연구개발기관은 특허전문가를 활용하여 해당 과제의 특허대응전략을 사업시작일 시점부터 1년 내에 수립하여야 하며, 필요시 총 수행기간 내에 추가적으로 특허전문가를 활용할 수 있음
- * 특허전략 수립비는 다른 항목으로 전용(변경) 불가하나 전략수립 완료 후 잔액에 대해서는 연구비 변경 가능함(단,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자체 특허분석 조직을 보유한 경우에는 미계상 가능)

2. 평가기준

평가항목		평가내용
기술성 (20)	개발기술의 중요성 및 창의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산업 임팩트) 개발 기술의 기술적, 산업적 임팩트, 미래의 파급효과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독창성] 세계적으로 선행특허(IP)가 거의 존재하지 않는 신기술(단순 요소기술 제외) ② [핵심성] 차세대(5~10년 이내) 신산업·신시장 개척을 위해 없어서는 안 될 필수 기술 ③ [혁신성] 파괴적 혁신을 통해 높은 산업적·경제적 파급효과를 창출하는 기술 ○ (고난이도 기술) 세계 최초, 최고 수준을 목표로 하는 도전적 미래기술, 고부가가치 기술 여부
	기술개발 계획의 타당성	○ 사전준비도 및 개발계획의 체계성 및 타당성
	개발목표의 적정성 및 달성가능성	○ 개발 목표 달성 방안의 구체성 및 가능성
연구수행 능력 (20)	해외기관 역량 및 역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해외기관 기술력) 해외기관 및 해외기관 연구자의 산업원천기술 보유 여부, 과제 내 기술개발 내용과의 연관성 ○ (해외기관 역할) 연구 내용 중 해외기관 기여도 및 역할(역무 범위)의 적절성
	기술개발팀 및 인프라 현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기술개발팀 구성의 적절성, 주관·공동기관 연구책임자 및 참여연구자의 역량 ○ 연구개발기관의 연구기반 확보정도(연구시설, 기자재, 선행 지재산 등)
국제공동 협력전략 (30)	국제협력 필요성 및 효과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국제협력 필요성) 신청기관이 제시한 국제협력 필요성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① [원천기술 선점형] 해외가 차세대(5~10년 이내) 신기술·신제품의 핵심 원천기술(IP)을 선점, 3년 이내 국내 개발 불가능 ② [투자효율 확보형] 해외 선진기술의 활용을 통한 개발기간(1년 이상) 및 비용(50% 이상)의 대폭 감축이 가능 ③ [인프라 확보형] 해외 선진연구기관 인프라를 활용한 국내 연구개발 제한사항 해소 가능 (글로벌 데이터 확보 등) ④ [국제표준 확보형] 해외 선진연구기관 노하우를 활용한 신기술·신산업 분야 해외 인증, 실증 및 글로벌 표준확보가 필수적 ⑤ [글로벌공급망 구축형] 고도의 기술 진입장벽(기술보안 등) 및 글로벌 공급망 구축이 요구되어 국제 공조가 필요한 분야
	국제협력 전략의 구체성 및 타당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인력파견 계획) 국내 기업의 연구성과 제고 및 인력교류 활성화를 위한 기업 연구자 해외 현지 파견 계획의 적절성 ○ 해외기관과의 사전 협의, 과제 내 협력 전략의 구체성
	산업기술정책 부합성 및 정책적 기대효과	○ (지원 분야 부합성) M.AX 분야 등 사업 목적에 부합하는 첨단 산업 해당 여부
시장성 (30)	지재산 확보 및 활용계획의 적절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원천기술 확보) 과제 수행중 또는 종료 후 국내 기업의 산업원천기술 확보 가능성 ○ (신성장동력 창출) 연구 성과를 통한 차세대 핵심기술 확보 및 신성장동력으로서의 성장 기대효과
	사업화 가능성 및 파급효과	○ (사업화 성과) 장기적 관점의 사업화 가능성 및 예상 성과

- 신청과제의 평가점수가 70점 이상인 과제는 “지원가능” 과제로 분류하고, 70점 미만인 경우 “지원제외” 과제로 분류함. 단, 70점 이상인 과제의 경우에도 예산사정 등에 따라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도 있음
- 평가위원회 결과에 따라 지원 대상 RFP에 부합하는 신청 과제가 없는 경우, 해당 RFP는 지원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음

3. 유의사항

가. 다음과 같이 국제공동R&D의 추진 타당성이 부족한 과제는 평가에서 불이익이 있을 수 있음

- R&D 추진에 있어 국가별 수행기관 간 상호 협력 없이 각자 독자적 R&D를 추진하는 경우 등
- 외국기관의 단순 용역(시험, 테스트 등), 위탁과제 수행형
- 국내에서 동일 기술수준의 협력파트너를 찾을 수 있는 경우. 단, 외국파트너가 해외 시장 진출에 결정적 역할을 하는 경우 제외

나. 인건비 및 인건비 계상률

- 총괄연구책임자를 포함한 모든 참여연구자의 최소 인건비 계상률은 10% 이상이어야 하며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하고 있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가 5개를 초과하는 경우 참여연구자에서 제외할 수 있음
 - 또한 총괄연구책임자(세부연구책임자 포함하되 공동연구책임자는 제외)로서 동시에 수행하는 국가연구개발사업 과제는 최대 3개 이내여야 함
 - 단, 공동운영요령 제20조2항1호부터 7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과제는 연구개발 과제 수에 포함하지 아니 하나 참여연구자의 인건비 계상률에는 포함함
 - 외국기관이 연구개발과제 협약에 따라 연구개발비를 부담하는 경우, 해당과제를 공동으로 수행하는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참여연구자에 대해서는 참여연구자가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6개로, 그 중 연구책임자로서 동시에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과제 수를 최대 4개로 제한할 수 있음

다.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 관련 유의사항

- 연구개발사업 수행자의 연구윤리확보를 위하여 “위조, 변조, 표절, 부당한 논문저자 표시, 연구비 유용 등”의 연구부정행위 적발시 그 결과에 따라서 관련 법령 및 요령에 의하여 관련자의 징계 및 정부 연구개발사업 연구개발비 환수 및 참여제한 조치 등이 이루어질 수 있음

라. 지식재산권 및 발생품의 귀속

- 연구개발성과는 해당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한 연구개발기관이 해당 연구자로부터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권리를 승계하여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함. 단, 연구개발 성과의 유형, 연구개발과제에의 참여 유형과 비중에 따라 연구개발성과를 연구자가

소유하거나 여러 연구개발기관이 공동으로 소유할 수 있음

- 연구개발성과에 대한 소유권과 실시권은 공동연구개발에 기여하는 정도 및 양 당사자가 공동연구개발에 참여한 이유 등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계약이 가능하나, 공동 연구개발성과는 공동 소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해외연구개발기관이 단독 소유하더라도 국내 연구개발기관이 우선 실시하도록 해야함
- 연구개발기관의 장은 해당 사업 수행과정에서 취득한 유·무형적 연구개발성과의 유지 및 관리에 대한 책임을 가지며, 연구개발성과의 실시 등 적정한 사유가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최종평가 이전에는 임의로 처분할 수 없음. 다만, 기술기반의 구축을 목적으로 하는 연구개발과제의 연구개발기관이 구입한 시설 및 장비를 성과활용기간 종료 전에 처분하고자 할 때에는 장관의 승인을 거쳐야 함.
- 기타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37조 및 제37조의2 참조

마. 청년기본채용 (연구개발기관 중 기업만 해당)

- 동일한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하는 참여기업들은 상호 협의를 통해 연구개발기간에 걸쳐 참여기업들의 정부지원연구개발비 합계액을 기준으로 5억원 당 1명 이상의 만 34세 이하(채용시점 기준, 군 복무 기간만큼 월 단위로 계산(1개월 미만은 올림)하여 추가로 인정하되 최대 만 39세까지 한정) 참여연구자(이하 “청년인력”이라 한다)를 참여기업들 중 한 곳 또는 여러 곳에 분산하여 신규채용(채용일부터 연구개발과제 공고일까지의 기간이 6개월 이내인 연구자를 포함)하고,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반영할 수 있음.
- 참여기업이 ‘청년기본채용’ 이외에 추가로 청년인력(채용시점 기준 만 34세 이하)을 신규채용 할 경우, 추가 채용한 인력의 해당연도 인건비만큼 해당연도의 기관부담 연구개발비 현금을 감액하여 현물로 대체 가능함

바. 안전관리형 과제

- 지원대상 과제 중 별도의 위원회를 통해 「산업기술혁신사업 공통 운영요령」 제2조 제1항 제40의3호에 따른 “안전관리형 과제”로 지정되는 경우, 관련 규정에 따라 ‘과제별 안전관리계획’을 제출하고 적절한 안전조치 및 점검을 실시하여야 함
- 연구실 안전관리비 산정 : 간접비 내에 인건비 합계의 1%이상에 해당하는 금액을 「연구실 안전환경 조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13조(안전 관련 예산의 배정)에 따른 연구실 안전관리비로 책정하여야 함
 - 대학, 국·공립연구기관, 과학기술분야 정부출연연구기관, 특정연구기관에 한함

사. 보안과제

- 신청자는 신청 과제의 보안등급(보안/일반)을 분류하여 이를 연구개발계획서에 표기

하여야 함

○ 보안과제는 아래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연구개발과제임

- 세계 초일류 기술제품의 개발과 관련되는 연구개발과제
- 외국에서 기술이전을 거부하여 국산화를 추진 중인 기술 또는 미래 핵심기술로서 보호의 필요성이 인정되는 연구개발과제
- 「산업기술의 유출방지 및 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의 국가핵심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 국가핵심기술 : 국내외 시장에서 차지하는 기술적·경제적 가치가 높거나 관련 산업의 성장 잠재력이 높아 해외로 유출될 경우에 국가의 안전보장 및 국민경제의 발전에 중대한 악영향을 줄 우려가 있는 산업기술로서 산업통상부 장관이 지정한 기술
- 「대외무역법」 제19조 1항 및 동법 시행령 제32조의2의 수출허가 등의 제한이 필요한 기술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방위사업법」 제3조제1호에 따른 방위력개선사업과 관련된 연구개발과제
- 그 밖에 산업기술혁신사업 보안관리요령 제10조에 따라 보안과제로 분류되어야 할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과제

○ 선정된 연구개발과제 중 외국에 소재한 기관·단체 또는 외국인과 공동으로 연구를 수행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과제가 「대외무역법」 제20조제2항에 따라 전략물자에 해당하는지에 관한 판정을 신청하여 그 결과에 따라 그 연구개발과제를 보안과제로 분류할 수 있음

○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에 지체없이 보안과제로 분류해야 함.

-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에 따라 지정 등 공모 외의 방법으로 연구개발기관을 선정한 경우
- 보안과제로 분류되었는지를 국연법 시행령 제9조제1항에 따른 공고에 포함시키는 것이 곤란한 경우

※ (참고) 국연법 제9조제4항 단서

- ① 국가안보 또는 사회·경제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연구개발과제인 경우
- ② 정부가 국제기구 또는 외국의 정부·기관·단체와 체결한 협정·조약 등에 따라 연구개발과제와 연구개발 기관을 특정한 경우
- ③ 법령에 따라 연구개발기관이 지정된 경우
- ④ 재난·재해, 경제여건 악화 등 사회적·경제적으로 긴급한 상황에 대응하기 위하여 정책적으로 국가연구 개발사업의 추진이 필요한 경우

⑤ 연구개발과제를 수행할 수 있는 연구개발기관이 한정되어 공모를 진행할 실익이 없는 경우

아. R&D 자율성 트랙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고, 해당 과제가 R&D자율성트랙으로 선정되면 R&D 수행절차를 완화해주는 특례 적용을 받을 수 있음
- 연구개발기관 선정 및 협약 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ITECH 산업기술R&D정보포털(itech.keit.re.kr)에서 수시 신청 (선정 이후 신청 시점의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의 신청요건에 따라 신청 가능)
- 최근 5년간 최종평가에서 ‘80점’ 이상 또는 성과활용평가에서 ‘우수’ 실적을 받은 기업이나 비영리기관의 연구책임자가 신청 가능
- 연구자율성 촉진을 위한 특별요령 제9조(R&D자율성트랙 특례)에 따라 다음과 같은 내용을 지원
 - 자율적인 최종 목표의 변경, 공동연구개발기관의 변경
 - 신규채용 여부에 상관없이 참여연구자에 대한 현금인건비 사용
 - 건당 단가금액 기준 1억원(부가세 포함) 미만 연구장비 또는 연구시설에 대한 중앙장비심의위원회 심의 생략
 - 연구개발비 내 비·세목 간 예산 변경
 - 연구개발비 자체정산 가능
- 심의기준 등은 별첨(R&D자율성트랙 제도안내) 참조
- R&D자율성트랙은 연구개발기관이 선정된 이후 주관연구개발기관이 선택적으로 신청할 수 있음

IV

신청방법 및 접수처

1. 신청요령

- 양식교부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홈페이지(www.kiat.or.kr) 및 과제관리시스템(www.k-pass.kr), GT Online(www.gtonline.or.kr)의 해당 공고 첨부파일 참조
- 신청기한 : 2026년 7월 15일(수), 16:00 (한국표준시 기준)
- 신청방법 : 계획서 및 첨부서류는 온라인 접수 (오프라인 서류 제출 불필요)

- 온라인 접수처 : www.k-pass.kr

< 통합회원가입 → 온라인 등록 → 파일 업로드 → 접수확인증 출력 >

- ① 통합회원가입 : 총괄연구책임자 및 연구개발기관이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등록되어 있는지를 확인하고, 등록이 되어 있지 않는 경우 신규 회원 가입
- ② 온라인 등록 : 신청기관 및 연구개발계획의 공통적인 내용 일부를 기입하는 것으로, 신청접수시 과제접수시스템(<https://www.k-pass.kr>)을 통해 총괄연구책임자가 직접 입력
- ③ 파일 업로드 : 신청 연구개발계획서 전체의 내용을 작성.업로드하는 것으로, 한글 등 문서파일로 양식을 다운받아 해당내용을 작성한 후 KIAT사업관리시스템(<https://www.k-pass.kr>)에 작성한 파일을 업로드
- ④ 접수확인증 출력 : 접수확인을 위한 접수증 출력한 후, 신청.접수 완료 확인(제출 불필요)

*** 연구개발계획서 접수 : www.k-pass.kr→로그인→과제신청→신규과제신청→공고명 선택 →온라인 접수→제출→접수증 출력 및 확인**

- * 전산등록 마감일에는 전산 폭주로 인하여 접수가 지연되거나 장애가 발생할 수 있으므로 사전에 접수 완료 및 제출 요망. 또한, **안내된 전산접수 마감일 시각 이후 전산접수 불가(마감시간에 작성중인 경우도 불가)**
- * 전산등록 시에는 주관연구개발기관의 총괄연구책임자가 로그인하여 전산등록(회원가입 필요)
- * 전산등록한 총괄책임자의 E-mail 및 휴대폰번호를 통해 진행 일정 등이 안내되므로, 정확한 연락처 입력 必
- * 직인이 필요한 별첨 서식의 경우 스캔본 업로드를 원칙으로 함
- * 제출된 서류 및 연구개발계획서 등이 허위, 위.변조, 그 밖의 방법으로 부정하게 작성된 경우 관련 규정에 의거, 선정 취소 및 협약해약 등 불이익 조치함
- *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음**

2. 제출 서류

구분	서류명	제출 대상기관	해외 기관 제출 여부	비고
1	연구개발 계획서(국문)	주관기관		- 양식2
2	연구개발 계획서(영문) * GITCC R&D Application	주관기관		- 양식3
3	국내 연구개발기관 대표의 참여의사 확인서	국내기관		- 양식4 - 모든 신청기관 한장에 날인 또는 기관별 별도 제출
4	해외 공동연구개발 기관의 참여의사 확인서 * Letter of Intent	해외기관	◎	- 양식5 - 해외기관 서명자 * 1단계 요약계획서 제출 시 협력센터의 참여의사 확인서는 연구행정부서 담당자 등 기관 차원의 확인이 가능한 자의 서명/날인, 또는 협력센터 PI 서명/날인

구분	서류명	제출 대상기관	해외 기관 제출 여부	비고
				* 그 외에는 모두 연구행정부서 담당자 등 기관 차원의 확인이 가능한 자의 서명/날인
5	참여연구자의 개인정보, 과세정보 제공활용 동의 및 청렴 보안서약서	국내기관		- 양식6 - 모든 참여연구자 서명 날인 * 영리기관의 경우, 과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영리기관장(대표)도 포함하여 제출
6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신청자격 적정성 확인서	국내기관		- 양식7
7	수요기업 협약서	국내기관 중 영리기관 (해당시 제출)		- 양식8 - 해당시 제출(필수 제출서류 아님)
-	국내 연구개발기관 사업자등록증	국내기관 중 영리기관		
-	연구개발기관의 기업부설연구소 인정서	국내기관 중 영리기관		- 한국산업기술진흥협회 발행 * "연구전담부서"는 인정 안 됨
-	연구개발기관 책임자의 재직증명서	국내/해외기관	◎	
-	국내 연구개발기관의 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국내기관 중 영리기관		- 표지(회계사 직인 포함), 재무상태표(표준대차대조표), 손익계산서(표준손익계산서)를 PDF로 스캔한 파일 * 국세청에서 발급하는 표준재무제표증명은 회계사 직인 불필요(회계감사보고서 또는 재무제표 사본은 원본 대조필 날인) * 직전년도로부터 최근 3년 결산자료, 직전년도 결산이 안 된 경우 그 직전년도로부터 3년 결산자료 * 상장사(거래소.코스닥)는 제출 생략 가능
-	해외 공동연구 개발기관의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해외기관 중 기업 또는 영리법인인 경우	◎ (해당)	- D&B 신용조사보고서(BIR)*, 한국무역보험공사 국외기업신용조사보고서, 또는 직전년도 회계감사보고서 * (관련 서류를 보유하거나 확보가 가능한 경우) 최근 1년내 발행된 신용조사보고서 또는 회계감사보고서 제출 ** (발급이 필요하거나 어려운 경우) 접수 완료 과제에 한하여 신용조사 기관을 활용하여 KIAT에서 일괄 발급 예정 *** 공고 접수 마감일 기준 보고서 유효기간 내 서류만 인정

1. K-PASS 온라인 접수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통합유지보수 (02-6009-4321, 4319)

2. 사업 내용 관련 문의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여인태 책임연구원 (02-6009-3744, intae119@kiat.or.kr)
- 한국산업기술진흥원 국제협력전략실 이소현 연구원(02-6009-3749, esohyeon@kiat.or.kr)
- 협력센터별 연락처

No	기관명	메일주소 (홈페이지)
1	Fraunhofer (K-FAST)	k-fast@fraunhofer.de
2	Georgia Institute of Technology (K-GTSEC)	kkim860@gatech.edu (https://sites.gatech.edu/kgtsec/contact/)
3	Johns Hopkins University	biohub@jh.edu
4	Purdue University (CORIA)	mbgjun@purdue.edu
5	Yale University (KCITY)	gitcc@yale.edu
6	MIT	gitcc@kiat.or.kr
7	University of Toronto (AIM)	chiguhn.lee@utoronto.ca kyeonghyeon.park@utoronto.ca
8	UCL	gitcc@ucl.ac.uk (https://www.ucl.ac.uk/enterprise/gitcc)